

3.1.3 교무위원회규정

제정 1997. 05. 01.

개정 2009. 09. 07.

개정 2018. 03. 14.

개정 2020. 11. 2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며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 교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03.14.>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8.03.14.>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

③ 부총장, 학생복지처장, 기획연구처장, 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8.03.14.>

④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 발전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03.14.>
2.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<개정 2018.03.14.>
3. 학과(부) 개편·폐지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03.14.>
4. 학칙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03.14.>
5. 삭제 <2020.11.26.>
6. 교내 각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사항 <개정 2018.03.14.>
7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날인을 받는다.

제7조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

제8조(간사 및 서기) 위원회의 간사는 교무과장이 되며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.

제9조(비밀엄수) 위원은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